

「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2. . .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상위법인 「아동복지법」에 근거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제3조제5호의 일부 조문 변경

「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
수정안

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호 중 “사실상 방치된 아동으로 아동보호 조치에 상당한 시일이 예상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”를 “사실상 방치된 아동에 대해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) 1 ~ 4. (생 략)	제3조(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) 1 ~ 4. (개정안과 같음)
5. ----- <u>사실상 방치된 아동으로 아동보호 조치에 상당한 시 일이 예상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</u>	5. ----- <u>사실상 방치된 아동에 대해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 호조치가 필요한 경우</u>